

학교법인 송원학원

제 426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6인	1인

1.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14 : 00 (회의소집통보일 : 2022년 10월 18일)

2. 장소 :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6인) : 고제철, 최승한, 이정주, 김옥현, 고경주, 김남경

- 감사 (1인) : 정진택

○ 불참임원

- 이사 (2인) : 류중일, 손혜란

- 감사 (1인) : 이승연

4. 안건

(1) 의안 제 1552호 정관 변경(안)

5. 의결사항

(1)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정관을 정비 【임면 조항 정비(원로교사 관련 조항 신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조항 정비(초등학교는 제외한다. 단서 조항 삭제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신설 :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부칙(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여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관을 변경하다.

6. 회의내용

이사장 고제철 :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 426회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 425회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이사장 고제철 : 제 425회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제 425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426회 이사회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제 1552호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하고, 제안설명을 하다.)

이 사 최승한 : 정관 변경(안)을 살펴본 결과 그 변경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정관을 정비【임면 조항 정비(원로교사 관련 조항 신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조항 정비(초등학교는 제외한다. 단서 조항 삭제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신설 :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부칙(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하여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고경주 : 최승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하실 이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이정주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김옥현·고경주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 사 김남경 : 이정주 이사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입니다” 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김옥현·고경주 이사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법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이사장 고제철 :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426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일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 전원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 14 : 50

학교법인 송원학원

이사장 고제철 (서명) 고제철.

이 사 최승한 (서명) 최승한

이 사 이정주 (서명) 이정주

이 사 김옥현 (서명) 김옥현

이 사 고경주 (서명) 고경주

이 사 김남경 (서명) 김남경

감 사 정진택 (서명) 정진택

정진택

신 · 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송원학원)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설) ⑦ (신설)	제39조 (임면) ①~④ <좌동> ⑤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이 남아 있어 각 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교원으로 임면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에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에 대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이 없는 관계로 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정관 개정. <u><교육공무원법></u>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5. 3. 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현행(구)	개정(신)	비고 (법령검토)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 부개정]) 반영
(신설)	제120조 (청렴의무) 법인 임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의2 (행동강령) ① 제12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단체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반영
(신설)	부칙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